

#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술인력육성
보조유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b>1. 보조사업의 타당성</b>	<b>55.2</b>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4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18.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8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b>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b>	<b>12.0</b>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0.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2.0
2-6. 실집행 실적	0.0

구분	총평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 사업방식 변경</li> <li>- (감축) 내역사업 '현장예술인력육성'(187.2억원)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15.8억원) 운영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감축에 따라, '예술인력육성'(222.8억원)은 향후 3년간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함</li> <li>- (사업방식변경) 세부사업의 실집행을 제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지급 방식 이외의 취업과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li> </ul>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내역사업 법적근거 미흡/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개선/ 사업방식 개선</li> <li>- 내역사업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사업(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함</li> <li>- 1992년부터 단년도 지속사업으로 유지, 예술인력육성을 위한 지원 방식 지속</li> <li>- 세부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미비함</li> </ul>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사업의 운영비 지원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 필요함</li> <li>·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함</li> <li>· 모든 내역사업의 연간목표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설정할 필요있음</li> </ul>

# 평가 의견서

## 1. 보조사업의 타당성

###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근거가 명확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6조, 제18조에서 문화예술 진흥,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제17조, 제23조에서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연법 제10조, 제13조에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하여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18조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청년기본법 제17조, 제23조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연법 제10조, 제13조 >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목적은 취약한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 본 사업의 목적은 신진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술현장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분야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임
  - 국정과제 68번(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핵심추진과제 ‘③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강화’와 연계성이 높음
- 단, 1992년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본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재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판단하여 사업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지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재교부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나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함

##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내역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 예술인력육성(’22년 22,279백만원)은 1992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22년 현재 ‘차세대예술인력육성’(7,314백만원, ’16년~)과 ‘현장예술인력육성’(14,965백만원, ’14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가 육성을 위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기획자 양성프로젝트, 무대예술전문교육 지원 및 운영,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등 5개 사업에 교육, 예술창작 및 발표보조금 지원함
  - (현장예술인력육성) 예술현장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등 3개 사업에 인건비, 사업운영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함
- 다수의 내내역 사업이 진행되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연수단원정규직 취업인원’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평가가 어려움
  - 연수단원정규직 취업인원(%) : (당해년도)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 정규직 취업실적(명)/(전년도)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선정인원수(명)
  - 세부 내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역사업별 지표 보완이 필요함

- 현장예술인 일자리지원 사업인 현장예술인력육성('22년 14,965백만원)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22년 10,666백만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사업예산에 최저임금 수준 반영하여 진행함. 사업 참여대상 전원에 표준계약서 필수작성, 4대 보험 의무가입, '예술인 권익보호 이해' 필수 수강 안내로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함
  - 만 34세 이하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창작지원사업으로 청년 맞춤 일자리 지원 국정과제 수행으로 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됨

###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일반회계의 공연예술단체 인력지원사업과 내내역사업인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의 유사성에 대해, 코로나19 환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 (일반회계 : 공연예술단체 인력지원사업) 6개월간 공연예술단체에 신규 고용보험 창출 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 다만, 해당 일반회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폐업을 방지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손실보상금 지원 차원에서 '22년 일반회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코로나19 대응 사업임. 코로나19 이후 일몰 예정 (일반회계 229억 2,000명 지원/기존 기금사업 30억 180명 지원)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현장예술인력이나 차세대예술인력이며 간접적으로는 문화예술창작물을 향유하는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단 일부 사업의 재교부 형태의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 보조사업의 근거가 약함
  - 인건비 지원이나 창작발표지원금 지원은 관련 전공자, 자격증 취득자, 만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등을 직접 수혜자로 지원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최종 수혜자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공적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을 위해 센터에 재교부하는 사업('22년 1,584백만원)은 본래 목적이나 목표와 일치하는가에 대해 판단할 근거 보완 및 사업 개선이 필요함

###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세부사업 ‘예술인력육성’의 ‘22년 예산은 22,279백만원으로 대규모사업에 해당함
  - 내역사업 ‘차세대예술인력육성’(‘22년 7,314백만원) : 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913백만원, 2)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 90백만원 3) 무대예술전문교육 : 2,880백만원 4)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2,960백만원 5)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471백만원
  - 내역사업 ‘현장예술인력육성’(‘22년 14,965백만원) : 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10,666백만원 2)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2,715백만원 3) 전문무용수지원센터운영지원 : 1,584백만원
- 현장예술인력지원의 인건비 보조사업은 10%이상 자부담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 4대보험료 지급 내역을 자부담하고 증빙하고 있음
- 내역사업 ‘차세대예술인력육성’의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의 자료 제출하였으나,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미비함

### 1-5 사회적가치 실현(가감점)

#### ① 사회적가치 실현 가점

- 가점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해보험료지급 등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청년 예술인력의 인건비와 4대보험 필수가입을 통한 노동권의 보장, 장애인 채용선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됨

#### <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내용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의무가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해보험료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li> </ul> </li> <li>○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부상위험이 높은 무용수들의 상해치료비 지원, 상해예방교육, 사전 부상 예방 검진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지표비 지원 : 전문무용수의 순수 무용 공연연습 또는 공연 중 입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li> <li>- 상해예방지원 : 부상이 잦은 무용수들에게 재활트레이너로부터 부상 예방 및 재활에 관한 운동치료 교육</li> <li>- 전문 무용수 부상예방검진 지원 : 무용수의 부상 원인 파악과 조기치료를 위한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 시행</li> </ul> </li> </ul>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예술인력의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으로 근로조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한 지원금 지급 및 4대 보험 필수 가입</li> <li>- 이를 통한 문화예술계 타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영향</li> </ul> </li> <li>○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안정화 및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연예술단체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준수와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공연예술계에 적절한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li> </ul> </li> <li>○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시각예술분야 전문가이나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의 인건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력 전문가임에도 적절한 인건비 및 불안정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시각예술분야 전문가 근로조건 개선</li> </ul> </li> </ul>
⑥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지원) 단년도 정부 일자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정규직 전환 고용 장려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근무한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고용장려금(월봉의 50%, 최대 1백만원, 6개월)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li> </ul>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장애인 채용선발 우선권 부여)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 공모 시 장애인 채용 희망 단체에 우선권 부여하여 장애인의 예술현장 근로여건 확대 노력 (장애인고용촉진법 공공기준 3.4% 선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장애인 18명 채용(21년 기준)</li> <li>-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장애인 7명 채용(21년 기준)</li> </ul> </li> </ul>

**정량적 증빙자료(과거 수치 비교 등 수치 활용)**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관련 실적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수 근로 복지 지원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상해치료비 지원</b>	무용수(명)	42	33	24	24
	지원금액(백만원)	70	41	37	29
<b>상해예방 지원</b>	트레이너파견(단체)	25	27	20	22
	지원단원수(명)	1,456	1558	1455	2,775
	지원금액(백만원)	122	124	104	167
	무용재활트레이닝실	-	-	-	-
	치료 무용수(명)	-	-	-	-
	치료횟수(회)	-	-	-	-
	지원금액(백만원)	-	-	-	-
	부상예방검진지원(명)	55	16	57	23
지원금액(백만원)	13	4	16	8	

-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 실적

연도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b>지원인원(명)</b>	29	32	38	40

- ※ 전년도 연수단원사업 참여자의 당해년도 정규직 채용 수
  -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노력

· 추진전략 : 채점제 도입 및 평가체계 구조화

구분	기존	개선
평가방식	· 적격·부적격 심사	· 채점심사(경쟁심사)
평가내용	· 정규직 전환 여부	· 정규직 전환여부 · 근로계약의 적법성 및 세부 근로조건 · 예술인력 직무배치 및 운영현황

· 추진내용

① 심의기준 및 지원신청서 개편

심의지표		지표내용	가중치
근로계약 사항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 '21년도 법정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적부
	정규직 전환여부	·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25
	대상자 보수수준	·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25
	근무계약의 구체성	· 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 휴게, 연장근로 규정 등	10
	근무조건적 적정성	·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10
예술인력 운영현황	단체 사업수행 실적	· '18-'20년도 연수단원지원사업 수행실적 · D등급 이하 결과 존재 시 심의대상 제외	적부
	예술인력 운영현황	·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30

② 지원심의 사후 노무컨설팅을 통한 근로계약 조건 개선

대상단체	· 지원심의 선정 예술단체 중 20개체의 세부 계약조건 개선 요구
추진방법	· 개선 필요성 제기된 단체에 대해 노무사 컨설팅을 거친 근로계약서 개정안 제공
개선내용	· 세부 근로조건 명시 여부 : 식대, 주휴일, 휴게시간 등 · 근로자 보호조항 추가 : 연차휴가 보장, 퇴사 및 인수인계 등 · 보수 지급체계 개선 : 기본급 및 공연수당 등 책정 체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등

· 추진성과

-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자의 고용환경 개선
- 단순 계속고용 지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연수단원 사후관리 강화로의 사업성과 확대

② 사회적가치 실현 감점

○ 감점

- 위반건수가 1건이며, 처분내용이 보조금 일부 환수 결정되어 효율적 예산운용에 저해됨

< 법령 등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환수, 시정명령 등) 현황 >

연도	행정처분 권자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처분근거(법령 등)
19년 (세부사업) 예술인력육성	-	-	-	-	-
(내역사업) 차세대예술 인력육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염인화	보조금 교부조건 미충족	보조금 일부 환수완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년 (세부사업)	-	-	-	-	-
21년 (세부사업)	-	-	-	-	-

< 보조사업자 대비 행정처분비율 >

연도	보조사업자 수(A)	법령 등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B)	법령 위반 비율(B/A)	행정처분 대상 보조사업자 수(C)
19년 (세부사업) 예술인력육성	-	-	-	-
(내역사업) 차세대예술 인력육성	49	1	2%	1
(내역사업)	-	-	-	-
20년 (세부사업)	-	-	-	-
21년 (세부사업)	-	-	-	-

##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 처리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절차가 명확함
  - 현장예술인력지원(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4대보험료를 예술단체의 자부담으로 책정하고 있음. 보조사업 선정심의 시 단체의 재정안정성, 자부담 관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제출·반영하고 있으며, 자부담 집행증빙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징구하여 철저히 관리함

###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하게 집행하는지와 관련해서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0조(보조사업자 수행상황 점검 등)에 근거함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7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38조(검증기관의 책임), 제39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52조(정보공시), 제5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54조(재산처분의 제한), 제55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56조(신고 포상금 지급)에 근거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실적보고서의 심사 및 보조금 삭감,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을 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51조(부정수급 점검), 제50조(부정수급 모니터링)에 근거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문예진흥기금의 부정수급점검계획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 환수, 제재, 제도개선 등으로 사후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음

##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 ①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점

○ 가점없음

- 부정수급에 대해 자체적발 실적(1건)이 외부적발 실적(2건) 보다 적음

####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주요 개선노력	~2019년	2020~2021년	2022년~	개선효과 (기대효과)
<b>보조사업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 준수하여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공모 시 단체의 재정안정성상 시 근로자수 등 계량 평가 지표 철저 반영</li> <li>· 해당 계량지표에 대한 노무세무법인 검증을 통한 결과의 신뢰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징후 포착 내역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과정에 환류('22년 공모시 반영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li> </ul>
<b>집행 및 사후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보조금 수혜자 변동 내역 미확인건 일부 존재</li> <li>· 예산 대비 보조금(인건비) 집행행위 상시관리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관리)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내 보조금 수혜자 정보 및 변동내역 전수 등록 ⇒ 중복 및 반복 수혜 철저 관리</li> <li>· (예산관리) 월 2회 주기점검을 통한 예산 대비 집행행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94.7%⇒20년 96.0%⇒21년 96.3%</li> </ul> </li> <li>· (정산관리)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 '18~'21년 보조사업 미정산 0건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 실집행률 철저 관리 지속 및 높은 수준의 실집행률 유지</li> <li>· 신규 및 점검필요 단체 위주 사무처 직원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운용의 투명성 강화</li> <li>· 연간 집행을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li> </ul>
<b>부정수급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수급 및 보조금 관리 미흡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적발 및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자 전수 현장 평가·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사전 관리</li> <li>·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내역 상시 관리 및 적시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li> <li>· 보조금(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업지침 배포로 인건비페이백 등 부조리 사전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징후 의심 단체에 대한 사전 포착 및 대응 용이</li> </ul>

< 부정수급 적발노력 >

연도	구분	이력	적발기관	내용	조치결과
2019년	자체적발	1건	문예위 감사실	지원수혜자지원자격 미부합 건제보	보조금 반환 및 포상금 지급
	외부적발	1건	인천미추홀 경찰서	대표자 사기혐의	보조금 내역 자료 제출 혐의 미확정
	전체	2건			
2020년	자체적발	건			
	외부적발	1건	국가권익위	보조금 수혜단체 인건비 유용 의심	의견청취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혐의 미확정
	전체	1건			
2021년	자체적발	건			
	외부적발	건			
	전체	건			

②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감점

○ 감점없음

- 2019년~2021년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30건의 부정징후 통보를 받았으나, 기한내 점검을 모두 완료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부정확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명됨

< 표 1 >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내역(2019~2021년)

사업	연도	통보건수	점검여부		점검기한 미준수	시스템 미등록	부정확인 건수
			점검O	점검X			
(세부사업) 예술인력육성	2019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16건	점검O	16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0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8건	점검O	8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1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6건	점검O	6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총계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30건	X		0건	0건	0건

## 2-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감점)

### ○ 감점

- 불용액 관리는 개선되어 실집행률은 3년 평균 96.5%임
- 사업성과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의 참가자 실태 조사(17년 ~20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여 지표화하는 노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 과거 평가 결과 이행 여부 >

2019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감축</li> <li>· 주요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 성과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li> <li>·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운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역사업은 예술인력양성 교육사업인 차세대예술인력지원과 일자리 사업인 현장예술인력지원으로 구성.</li> <li>· 불용관리 : 현장예술인력육성 집행률은 2019년 96.86%, 2020년 98.85%, 2021년 98.45%로 불용 제거에 힘쓰고 있으며, 국정과제 이행사업(국정과제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으로 최저임금 연동 지속 증액 편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li> <li>· 주요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기간이 장기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사후관리가 미흡함</li> </ul> </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 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은 매년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조사업 선정과정에 환류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개년 참가자 취업실태 조사 실시 ('21년 조치완료)</li> </ul>

## 2-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

### ○ 감점없음

### < 실집행 실적 >

구 분	3년 가중평균 실집행률 (A×20%+B×30%+C×50%)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실집행률	96.5%	97.2%	98.3%	95.1%
실집행 부진 사유**	· 해당 없음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세부사업의 목적과 재원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나, 특정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미흡함
  - 내역사업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사업은 해당 센터에 재교부되며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움
  - 관련 사업의 운영비 지원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오랜 기간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내용에 대해 사업지속 기간 조정과 사업방식 개선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1992년부터 예술인력육성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명백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세부사업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해 적절한 지표 설정이 요구됨. 전체 사업목표에 부합된 지표를 통해 다수의 내내역사업이 연계되거나 포괄적으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지표제시가 필요함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내역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 다수의 내내역 사업이 진행되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연수단원정규직 취업인원’(% )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목적과 일치하고 재정투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19년 평가 결과에서도 ‘사업성과가 동 예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나 개선의 노력이 미흡함
- 세부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